

동산고등학교 운동부 지도자(야구부 투수 코치) 채용 공고

1. 채용인원 및 담당업무

직 종 명 (채 용 사 유)	채용인원	담 당 업 무	비고
학교운동부지도자	1명	○ 학생 선수에 대한 훈련계획 작성, 지도 및 관리 ○ 학생 선수의 각종 대회 출전 지원 및 인솔 ○ 경기력 분석 및 훈련일지 작성, 훈련장 안전관리	

2. 근로조건 및 보수 등

가. 근로계약기간: 2026.10.01. ~ 2027.02.28.(5개월)

“계약 기간 종료 후 직무수행실적, 복무태도, 운영성과에 따라 1년 단위 재계약”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기 계약 전환 대상 아님”

나. 근무장소: 동산고등학교(훈련 장소에 따라 다를 수 있음)

다. 근로시간: 08:30 ~ 16:30을 원칙으로 하나, 훈련 및 출전, 전지훈련 등을 고려하여 1일 8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음.

라. 근무형태: 상시근무자

마. 보 수

- 지급형태: 월급제
- 기본급: 2026학년도 교육공무직원 보수 지급 기준에 준함
- 지도수당: 학교장이 지도경력과 실적을 고려하여 정함
- 4대 보험 가입(보험료 개인부담금은 개인소득에서 공제)
- 기타 근로계약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 관련 법령 및 『동산고등학교 소속 근로자 취업규칙』에 의함

3. 자격요건

가. 「인천광역시교육감소속근로자 취업규칙」 제5조의 결격사유 및 아래 해당 되지 아니한 자

- ▣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성년후견인 또는 파한정후견인으로 후견 등기부에 기록된 사람
-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의한 성범죄 경력조회 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 ▣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의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 ▣ 공인된 종합 의료기관에서 신체검사 결과 취업이 부적당한 자로 판정된 사람
- ▣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 ▣ 최근 3년간(2023년도 이후) 음주 운전 적발된 자 (2회 이상 / 면허 취소된 자)
- ▣ 최근 3년간(2023년도 이후) 청렴 위반 (부정청탁 금품수수 등) · 아동학대(학교폭력 포함) 관련 징계 처분(학교장 징계 포함) 및 자격정지(6개월 이상) 받은 자 ([징계정보시스템 등 확인](#))
- ▣ 응시 기준 자격정지(확정) 중인 자 (3개월 이상)
- ▣ 학교운동부 지도자 활동 중 규정 위반으로 계약 해지(해고 포함) 되어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 ▣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람 (언론보도)

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

다. 체육지도자 자격 소지자(※ 체육지도자: 전문스포츠지도사, 건강운동관리사, 생활스포츠지도사,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노인스포츠지도사, 장애인스포츠지도사)

라. 올바른 가치관을 갖고 해당 분야에 전문적인 자격이나 능력을 갖춘 사람

마. 학교의 실정에 맞게 시간 조정이 가능한 자

바. 야구 종목을 전공했던 자

사. 프로야구선수 경력 또는 학생야구 지도 경력자

4. 채용기준 및 방법

가. 채용기준

- 제3항의 응시자격을 갖춘 자 중 1차 시험(서류심사)에 결격사유가 없고, 2차 면접에 합격한 자

나. 채용(시험) 방법

- 1차 : 서류심사
- 2차 : 면접심사
- 최종 합격자 통보 : 개별 통보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5. 제출서류

- ① 응시원서(사진 포함) 1부
- ② 자기소개서 1부
- ③ 주민등록초본 1부
- ④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 ⑤ 자격증 또는 면허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1부
- ⑥ 등기사항 부존재 증명서
- ⑦ 채용신체검사서 1부
- ⑧ 상범죄 경력 및 이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1부
- ⑨ 징계 관련(징계정보시스템 발급) 증명서 1부.
- ⑩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동의서 1부
- ⑪ 음주 운전 부존재 확인서(운정경력증명서) 1부

6.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26. 09. 15.(화) 08:30 ~ 2026. 09. 21.(월) 16:30 (토, 일요일 제외)

나. 접수장소 : 동산고등학교

다. 접수방법 : 본인 직접 방문, 전자메일 접수(dongsan-hs@naver.com)

※ 전자메일 접수 시 2026년 9월 21일 (월) 16:30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함.

라. 응시원서는 제출 및 접수 후 기재사항에 대하여 수정할 수 없음

마. 서류심사결과 발표 : 2026. 09. 21.(월) - 18시 이후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보

바. 면접일시 및 장소 : 2026. 09. 23.(수) , 오전 11시

사. 최종합격자: 2026. 09. 23.(수), 18시 -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보

7. 채용서류 반환

- 가. 채용 여부 확정 이후 구직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한 후 반환함 (**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
- 나. 반환청구권 행사 기간 : 채용확정일 이후 14일부터 180일 이내
- 다. 반환청구권 행사 방법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제출한 경우만 우편으로 반환
- 라. 반환기한 : 반환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
- 마. 채용서류 파기 : 반환청구권 행사 기간 내 요구가 없을 경우 채용서류 파기
- 바. 기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사. 전자메일로 신청하는 경우는 채용서류 반환하지 않음

8. 유의사항 및 기타

- 가. 공고된 사항의 불이행, 제출 서류의 허위 기재 또는 기재 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채용서류의 거짓 작성 금지)
구직자는 구인자에게 제출하는 채용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 나. 접수된 채용서류를 반환 청구할 경우 본인 확인 후 **채용확정일 이후 14일부터 180일 이내 청구할 수 있으며**, 해당 서류는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반환됩니다.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시행령 제2조
- 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구직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제출(수신 여부 유선 확인 필수)하여야 합니다.
- 라. 합격자 통지 후라도 성범죄경력조회·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근로자로 임용하기에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임용이 취소됩니다.
- 마. 최종합격자의 합격 취소 시 상기 2차 심사에 의거한 차점자를 채용합니다.
- 바. 지원자가 적은 경우라도 자체 면접기준에 미달 시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사. 문의 사항은 동산고등학교 교무실(☎ 032-763-7825), 행정실(☎ 032-763-782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학교 소재지 :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동산로 58, 동산고등학교

2026. 09. 15.

동산고등학교장

붙임 1. 운동부지도자 채용 지원서

2. 자기소개서

3.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동의서

4. 근로자 채용 통합 확인서

5.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끝.

운동부지도자 채용 지원서

구분				※접수번호			
운동부지도자				기재하지 않음			

6개월 이내 반명함판	인 적 사 항	성명	한 글	생년월일		성별	
			한 자				
		현 주 소					
		e-Mail		병역사항 (□에 □ 또는 ■)	필□, 미필□, 면제□		
		자택전화			복무 기간(년 월)		
		휴 대 폰			면제 사유:		

학 력 사 항	학 교 명	재 학 기 간	전 공	수학 구분	소재지
	고등학교			졸업	
	대학교			졸업	
	대학원			졸업/재학/수료/중퇴	

경 력 사 항	직 장 명	근 무 기 간	근무부서	담당업무	퇴직사유

자 격 □ 어 학	자격			어학		
	자격명	취득일자	발급기관	어학시험명	점수	취득일자
	경기지도자					

위 기재 사항은 허위기재 사실이 전혀 없음을 확인하며, 만약 허위기재 사실이 발견되면 미채용(또는 계약 해지) 처리됨을 자필로 서명하고 인정합니다.

2026년 9월 일

작성자 : (서명)

동 산 고 등 학 교 장 귀하

응시원서 작성요령

1. 응시원서는 반드시 소정 양식을 다운받아 한글로 작성하여 제출
2. 응시원서 작성 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응시자 본인의 불이익이 됨
3. 『응시원서』는 아래의 『작성 요령』에 따라 작성함

『작 성 요 령』

- ① 주소: 주소는 현재 거주하는 곳을 기재하며, 연락처는 긴급 연락이 가능하도록 정확히 기재
- ② 학력 사항: 최종 학력이 대학원 졸업인 경우 대학교(기관)도 기재
- ③ 경력 사항: 공공기관, 민간회사 등 근무경력을 기재
※ 기재 공간이 부족한 경우 별첨으로 작성 가능
- ④ 자격·어학: 해당 자격증명 또는 어학성적을 기재하되, 해당 자격증 및 어학성적 사본 제출

자기소개서(양식)

1. 지원동기, 지도교육관, 지도계획 등을 기재

※ 작성요령

- 양식에 따라 자유롭게 기술하되 지원동기, 본인의 지도교육관, 지도계획(2쪽 이내)을 포함하여 5쪽 이내로 작성

※ 세부사항

1. 작성 방법 : 한글로 자기소개서 작성(자필, 한글문서 모두 가능)
2. 글자 모양 : 글꼴(함초롬바탕, 또는 바탕체), 기준크기(12포인트)
3. 제출 분량 : 본 양식을 변경하지 않고 작성하되 총 분량은 5장 이내
4. 유의 사항 : (더블)클립이나 스테이플러로 고정하지 않고 낱장으로 제출

작성 요령 및 세부 사항은 삭제 후 작성함.

1. 지원동기
2. 지도교육관
3. 지도계획
4. 기타

위의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는 허위사실이 없음을 약속합니다.

2026년 9월 일

지원자 :

(인/서명)

동산고등학교장 귀하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대상자	성명(외국인의 경우 영문으로 작성)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연락처(휴대전화 등)

본인은 동산고등학교의 취업자등으로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에 따른 성범죄 경력 조회와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5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의 통합 조회에 동의합니다.

2026 년 월 일

동의자 (서명 또는 인)

경찰서장 귀하

유의사항

- 개인정보 수집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및 국적)
- 개인정보 제공 거부에 따른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 거부 시에는 취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수집된 개인정보는 성범죄 경력 조회,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등을 위하여 사용됩니다.
- 동의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뒤쪽에 일괄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채용 통합 확인서

Ⅱ 이용사무(이용목적): 근로자 채용

채용 대상자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채용직종
				운동부지도자

본인은 동산고등학교 운동부지도자로 채용됨에 있어 아래 동의(또는 확인)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자동 면직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순	구분	이행 내용	동의여부																									
1	서약서 【공통】	본인은 성실한 자세로 근무에 임할 것이며, 본인 과실로 인한 문제 발생 시 책임을 지고 계약해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근무 중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은 계약기간 중은 물론, 계약만료 후에도 외부에 일체 누설하지 않는다 2. 직무 관련 명령을 준수하고 정당한 직무상 명령에 따른다. 3. 출퇴근 시간 및 인천광역시교육청의 제반 근무수칙을 엄수한다. 4. 기관의 명예와 신용을 손상하거나 업무관련 자료를 유출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5. 업무 수행 중 특별한 문제점이 발생될 시에는 즉시 보고하고 업무지시를 받는다.	[] 예 [] 아니오																									
2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공통】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제3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위의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수집·이용 등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채용 및 선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필수] 기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table><tr><th>구분</th><th>수집·이용 항목</th><th>수집·이용 목적</th><th>보유기간</th></tr><tr><td>채용절차 진행 중</td><td>성명, 생년월일, 주소, 성별, 연락처, 자기소개, 학력, 경력, 자격사항, 전자우편주소</td><td>본인 식별확인, 최종합격자 결정을 위한 채용업무 절차 추진</td><td>전형 절차 완료 후 5년 (합격자는 준영구 보관)</td></tr><tr><td>채용확정 후</td><td>사진, 주민등록번호, 신체검사 결과, 계좌은행명, 계좌번호, 가족사항, 차량번호</td><td>근로계약 체결 및 고용유지, 급여 지급, 각종 제증명 발급 등 근로자 인사·복무 기록관리, 청사출입관리</td><td></td></tr></table> ◎ [필수] 민감정보 수집·이용 내역 <table><tr><th>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th><th>수집·이용 목적</th><th>보유기간</th></tr><tr><td>주민등록번호, 장애정보, 국가유공자 정보 등 취업지원대상자 관련 정보</td><td>근로계약 체결 및 고용유지, 법적사무처리</td><td>전형 절차 완료 후 5년 (합격자는 준영구 보관)</td></tr></table>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 <table><tr><th>제공받는 자</th><th>제공 항목</th><th>이용 목적</th><th>이용기간 및 보유기간</th></tr><tr><td>결격사유조회 기관</td><td>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td><td>성범죄경력조회, 아동학대 관련 범죄 경력 조회</td><td>결격사유 조회 기간</td></tr></table> [] 동의 [] 미동의	구분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채용절차 진행 중	성명, 생년월일, 주소, 성별, 연락처, 자기소개, 학력, 경력, 자격사항, 전자우편주소	본인 식별확인, 최종합격자 결정을 위한 채용업무 절차 추진	전형 절차 완료 후 5년 (합격자는 준영구 보관)	채용확정 후	사진, 주민등록번호, 신체검사 결과, 계좌은행명, 계좌번호, 가족사항, 차량번호	근로계약 체결 및 고용유지, 급여 지급, 각종 제증명 발급 등 근로자 인사·복무 기록관리, 청사출입관리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주민등록번호, 장애정보, 국가유공자 정보 등 취업지원대상자 관련 정보	근로계약 체결 및 고용유지, 법적사무처리	전형 절차 완료 후 5년 (합격자는 준영구 보관)	제공받는 자	제공 항목	이용 목적	이용기간 및 보유기간	결격사유조회 기관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성범죄경력조회, 아동학대 관련 범죄 경력 조회	결격사유 조회 기간
구분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채용절차 진행 중	성명, 생년월일, 주소, 성별, 연락처, 자기소개, 학력, 경력, 자격사항, 전자우편주소	본인 식별확인, 최종합격자 결정을 위한 채용업무 절차 추진	전형 절차 완료 후 5년 (합격자는 준영구 보관)																									
채용확정 후	사진, 주민등록번호, 신체검사 결과, 계좌은행명, 계좌번호, 가족사항, 차량번호	근로계약 체결 및 고용유지, 급여 지급, 각종 제증명 발급 등 근로자 인사·복무 기록관리, 청사출입관리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주민등록번호, 장애정보, 국가유공자 정보 등 취업지원대상자 관련 정보	근로계약 체결 및 고용유지, 법적사무처리	전형 절차 완료 후 5년 (합격자는 준영구 보관)																										
제공받는 자	제공 항목	이용 목적	이용기간 및 보유기간																									
결격사유조회 기관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성범죄경력조회, 아동학대 관련 범죄 경력 조회	결격사유 조회 기간																									
3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공통】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업무처리 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공동이용 행정정보명 범죄 경력 유무 조회 ※ 동의하지 아니할 경우 불이익은 없으나, 미동의시 본인이 관련 첨부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함 ※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 동의 [] 미동의																									
4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 【3개월 이내】 (단, 공개채용인 경우 생략 가능)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1조에 따른 가족 채용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① 가족채용 채용대상자의 가족 중 채용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또는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가 있는가? 채용대상자의 가족 중 채용기관이 산하 공공기관인 경우 그 기관의 감독기관(자회사인 경우 모회사) 소속의 고위공직자가 있는가? ② 예외 해당여부 ①에서 “예”에 답변한 경우,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이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가족을 채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경우인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 예 [] 아니오																									

순	구분	이행 내용	동의여부								
5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공통】	본인은 아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 채용 후 아래 결격사유가 확인될 경우 자동 면직됨 결격사유 ▣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채용결격사유) 및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특수운영직군 인사관리규정」 제5조(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1.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후견등기부에 기록된 사람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의한 성범죄 경력조회 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8.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의한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조회 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9. 공인된 의료기관에서 신체검사 결과 취업이 부적당한 자로 판정된 사람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사유로 비위 면직된 사람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비위 면직된 사람 : 아래 『①, ②, ③-1, ③-2』 또는 『①, ②, ④-1, ④-2, ④-3』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body> <tr> <td style="width: 5%;">①</td><td> 1. 공직자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지 * 공직자: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3호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td></tr> <tr> <td>②</td><td> 2. '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지 (다만, 적발 시기는 재직 중, 퇴직 후 불문) * 부패행위: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예시)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폭행, 단순업무상 과실, 복무위반, 불성실: 비해당 금품요구, 편의수수, 공금횡령, 공용물 사적사용, 수당·여비 부당수령: 해당 </td></tr> <tr> <td>③</td><td> 3-1. 해당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사실이 있는지 3-2. 위 퇴직일(당연퇴직·파면·해임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1호) </td></tr> <tr> <td>④</td><td> 4-1. 해당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 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4-2.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또는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5년 내) 4-3. 권익위법(16.3.29. 제14145호) 시행(16.9.30.) 이후 퇴직자인지 여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2호, 부칙 제2조) </td></tr> </tbody> </table> 11.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 공고일 현재 취업가능 법정 연령(18세 이상)에 미달한 자	①	1. 공직자로 재직 한 경력이 있는지 * 공직자: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3호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②	2. ' 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 '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지 (다만, 적발 시기는 재직 중, 퇴직 후 불문) * 부패행위: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예시)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폭행, 단순업무상 과실, 복무위반, 불성실: 비해당 금품요구, 편의수수, 공금횡령, 공용물 사적사용, 수당·여비 부당수령: 해당	③	3-1. 해당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 된 사실이 있는지 3-2. 위 퇴직일 (당연퇴직·파면·해임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1호)	④	4-1. 해당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 선고 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4-2.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 (또는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5년 내) 4-3. 권익위법(16.3.29. 제14145호) 시행(16.9.30.) 이후 퇴직자인지 여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2호, 부칙 제2조)	[] 예 [] 아니오
①	1. 공직자로 재직 한 경력이 있는지 * 공직자: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3호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②	2. ' 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 '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지 (다만, 적발 시기는 재직 중, 퇴직 후 불문) * 부패행위: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예시)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폭행, 단순업무상 과실, 복무위반, 불성실: 비해당 금품요구, 편의수수, 공금횡령, 공용물 사적사용, 수당·여비 부당수령: 해당										
③	3-1. 해당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 된 사실이 있는지 3-2. 위 퇴직일 (당연퇴직·파면·해임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1호)										
④	4-1. 해당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 선고 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4-2.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 (또는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5년 내) 4-3. 권익위법(16.3.29. 제14145호) 시행(16.9.30.) 이후 퇴직자인지 여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2호, 부칙 제2조)										

위의 내용을 모두 확인하였으며, 이에 일괄 동의 및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

동산고등학교장 귀하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청구인	성명	수험번호
주 소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 우 기재)		
반환청구서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
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2026년 9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동산고등학교장 귀하

공지사항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 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